

제 289 호

1972. 9. 29.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 택식

편집 : 공보실 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시

보

차

례

이 영구보존문서는 마이크로

필름으로 되어있다.

1972. 9. 3.

서울특별시 시민과장

◎ 조례

제 728 호	서울특별시 학생체력검정수료장수조례	3
제 729 호	서울특별시 건설자재생산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개정조례	3
제 730 호	서울특별시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3
제 731 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7
제 732 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원 보수조례 중개정조례	11
제 733 호	서울특별시 녹지사업소 설치조례	11

◎ 고시

제 13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12
---------	---------------	----

◎ 공고

제 221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생산지 정업체선 청공고	13
---------	--------------------------	----

◎ 사령	13
------	----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학생체력검정수수료징수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1972. 9. 28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하점 생

◎ 서울특별시 조례 제 728 호

서울특별시 학생체력검정

수수료 징수조례 (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와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이와 동등한 학교의 입학고사 대신에 필요하여 시행하는 학생체력 검정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징수금액)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은 전 조에 규정된 학교진학을 위하여 학생체력 검정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자 1인당 250원의 검정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 3 조 (징수방법) ① 검정수수료는 수험원서 접수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일단 납입된 검정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건설자재생산비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2년 9월 30일

◎ 서울특별시 조례 제 729 호

서울특별시 건설자재생산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건설자재생산비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중 "채석공장, 역청공장, 제관공장" 을 "건설자재생산공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9월 30일

◎ 서울특별시 조례 제 730 호

서울특별시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법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그위치 구조설비의 변경허가와 원공겸사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수료 납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또는 그 위치 구조 설비의 변경허가와 완공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 1 호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백에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일단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한 수입증지를 신청서 여부에 첨부하여 조례에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제 1 호)

1.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수수료

구 분	취 급 수 량	수 수 료 액
1. 제 조 소	지정 수량의 10 배이하	1,000 원
	지정 수량의 10 배이상 100 배미만	2,000 원
	지정 수량의 100 배이상 200 배미만	3,000 원
	지정 수량의 200 배이상	4,000 원
2. 지 장 소		
저 장 고	지정 수량의 50 배미만	1,000 원
저 치 장	지정 수량의 50 배이상	1,500 원
옥 외 조		800 원
지 하 조	지정 수량의 100 배이하	1,000 원
옥 내 조	지정 수량의 100 배이상 10,000 배미만	1,500 원
	지정 수량의 10,000 배이상	2,000 원
지 하 조	지정 수량의 100 배이하	1,000 원
	지정 수량의 100 배이상	2,000 원

구 분	취 급 수 량	수 수 료 액
3. 취 급 소		
주 유 소		3,000 원
판 매 소		800
취 급 장		1,500
운 반 조		1,000
주 조		3,000

2. 제조소등의 변경하가수수료

구 분	취 급 수 량	수 수 료 액
제 조 소 등		제조소등의 종별에 따라 전호의 수수료의 반액

3. 제조소등의 설치 완공검사수수료

구 분	취 급 수 량	수 수 료 액
제 조 소 등	설치의 준공검사 (변경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포함한다)	제조소등의 종별에 따라 제 1호 수수료의 반액

4. 저장조 충수시험수수료

구 분	취 급 수 량	수 수 료 액
저장조	용량 10,000 리터 미만	500 원
(충수시험)	용량 10,000 리터이상 1,000,000 리터미만	1,000 원
	용량 1,000,000 리터이상 2,000,000 리터	1,500 원
	용량 2,000,000 리터 이상의 것	2,000 원
	다만 500,000 리터를 초과할 때마다 1,000 원을 가산한다.	

5. 저장조의 수압시험수수료

구 분	취 급 수 량	수 수 료 액
(수압검사)	용량 600 리터 미만	300 원
	용량 600 리터이상 10,000 리터미만	1,000 원
	용량 10,000 리터이상 20,000 리터미만	1,500 원
	용량 20,000 리터이상의 것 다만 10,000 리터를 초과할 때마다 500 원을 가산한다.	2,000 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정수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9월 30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31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정수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하 "점용"이라 한다)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말한다.

다만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및 유료도로는 제외한다.

제 3조 (점용허가) (1)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 통신 설비 및 전선로와 이들의 지지물 및 그 지지물에 유사한 공작물을 설치를 위한 점용.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3. 광고탑, 광고판 등의 설치를 위한 점용.
4.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

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와 이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5. 철도, 궤도와 이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6. 지하도, 지하실과 이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7. 전 각호에 게기된것 이외에 시장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을 위한 점용

(2) 전항 각호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점용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 4조 (점용료의 산정 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천정한다.

② 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전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허가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가 각각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양점용 일수를 합산한 것이 1월을 초과하거나

1월에' 미달하는 때에도' 포함 같다.

(4) 점용 면적의 단위량에 3.3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3.3평방미터로 계산한다.

(5) 점용료는 당해년도의 정부 교시·부동산 징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야 한다. 다만 연도중 부동산 징가표준액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표준액에 의하여 추정한다.

제 5조 (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점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 6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는 회계년도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허가를 한년도분은 그 허가시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다음해 1월중에 징수한다.

②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 7조 (징수) ① 점용료의 징수는 점용 허가시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8조 (점용료의 불반환)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에 의하여 점용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9조 (점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자.

2. 무정한 수단으로 이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자.

3. 허가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자.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0조 (주차장) ① 시장은 도로유지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일무를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사용료와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점용료는 빌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적영하지 아니하는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주차장 설치를 취소할 수 있다.

제 11조 (파태료) 시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점용요금의 5배 이내의 파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 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1963년 7월 15일자 서울특별시조례 제309호 서울특별시도로(궤도부지)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한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징수에 관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표

번호	구 분	산정방법
1	전기통신설비 및 간선로와 이들의 지지물 및 그 지지물에 유사한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	1. 점용토지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점용 목적이 선주인 경우는 1주당 단주는 100원 표주는 200원 철탑은 300원으로 한다.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1. 점용토지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3	광고탑·광고판 등의 설치를 위한 점용	1. 광고하는 면적이 6.6평방미터 이하인 것은 500원, 6.6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1,000원으로 한다.
4	주유소·주차장·자동차정류장·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및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1. 점용토지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다.
5	철도·궤도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1. 점용토지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6	지하도·지하실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1. 점용토지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다.
7	전 각호에 게기된 것 이외에 관리 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을 위한 점용.	1. 점용토지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다.

별표 2

서 울 특 페 시 도로 주 차 장 사 용 료 표

번 호	구 分	주 차 장 사 용 료 표
1	정액주차료 (월액)	1. 화물차 (삼륜차포함) 및 승합차 3,000 원 2. 자가용 승용차 2,000 원 3. 영업용승용차 (소형용달차포함) 1,500 원
2	1회주차료 (시간당)	1. 화물차 (삼륜차포함) 및 승합차 50 원 매 30분 초과시 20원 가산 2. 자가용 승용차 30 원 매 30분 초과시 10원 가산 3. 영업용승용차 (소형용달차포함) 20 원 매 30분 초과시 10원 가산
3	다만 시장이 직영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원 보수 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2년 9월 30일

⑥ 서울특별시 조례 제 732 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원

보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원보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1 항 중 "별표 5"를 "별표 4"로 하고 "7호봉"을 "1호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농지사업소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9월 30일

⑦ 서울특별시 조례 제 733 호

서울특별시 농지사업소설치조례

제 1 조 사방사업의 시행과 사방지 공지를 보호관리하고 농지재 및 가로수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사업소의 명칭 위치 및 관리구역은 다음과 같다.

명 칭	위 치	관 리 구 역
서울특별시 북부농지사업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129-1	서울특별시 한수이북일원
서울특별시 남부농지사업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내	서울특별시 한수이남일원

제 3 조 사업소에 소장을 둔다.

소장은 지방농림기좌로써 보한다.

소장이 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진항의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5 조 소장은 사방사업 시행상 필요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방사업 구를 설정하여 소속공무원을 주재케 할수 있다.

제 6 조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부 칙

-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폐지조례) 1959. 5.11자 서울특별시 조례 제 162호 서울특별시 사방관리소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282

고 시

⑥ 서울특별시 고시 13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2. 9. 29.

서울특별시장

가. 노선조사 별첨

나. 도면 별첨(도면은 서울특별시청에 보관)

새마을운동 현지개량사업 지구내 가로신설 조서

1. 상도3동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2	1	8 ^m	118 ^m	상도동산 74-1 (소3-1교)	상도동산 74-1	
" "	3	1	6	155		상도동산 74-1	상도동산 74-1 (소2-1교)	
" "	4	1	4	67		"	상도동산 74-1 (소3-1교)	
" "	"	2	"	132		상도동산 74-1 (소3-1교)	상도동산 74-1	
" "	"	3	"	75		상도동산 74-1 (소3-1교)	"	
" "	"	4	"	23		상도동산 74-1	상도동산 74-1 (소2-1교)	
" "	"	5	"	57		"	상도동산 74-1	

2. 송인1동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3	1	6 ^m	215 ^m	송인동 31-1	송인동 58-16	
" "	4	1	4	160		송인동 56-135	송인동 32-11	
" "	"	2	"	55		송인동 56-137	송인동 58-516	
" "	"	3	"	200		신설동 14-6	송인동 56-63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221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생산

자 정업체 선정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생산 지정업체를 다음에 의하여 선정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972. 9. 29

서울특별시장

1. 선정 목적

내수산 위주의 중소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품 생산업체 또는 수출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업체의 수출품 생산지정업체로 지정 육성하여 수출 기반을 확충함.

2. 신청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에 규정한 중소기업 차로서 상공부 장관이 정한 유형 구분에 의한 제1 및 제2 유형에 분류된 품목 생산자종

가. 서울특별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수출품 생산 및 수출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연간 수출 실적 3만톤 이상 이거나 수출계획 5만톤 이상인 업체로서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가입자로 하되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여 조합가입이

불가능한 입종 생산자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입종분류) 별표의 분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입종 생산자는 협동조합 가입자가 아니라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광업, 운송업, 및 상업, 기타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한다.

3. 신청 방법

가. 신청서류 : 신청서 (신청공업과배부) 및 증명서류 1부

나. 신청기간 : 1972. 9. 29-1972. 10. 10
다. 신청한곳 : 공장소재지 관할구청 (산업국 또는 상공부)

* 구청장은 시장(공업과)에게 전달

4. 신청 방법

설제조사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 품 생산 지정업체 신청 기준과 평점 방법에 의하여 평점한 평점수 60점 이상 업체를 선정하여 공고 한다.

다만 평점수 40점 이상 업체수가 지정취소 업체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 업체수는 0점 미만 업체라도 선정할 수 있다.

사령

◎ 1972. 9. 27

경기도양주군 지방행정주사 권완선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2호봉을 금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14-14

제 289 호

시 보

1972.9.29.

① 1972.9.28.

양지회관 지방행정주사 안기정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972년
9월 14일 그 직을 면함.

마포구 지방행정서기 강창욱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② 1972.9.29.

동부병원 지방보건기사보 이성찬
정신병원 근무를 명함.

한강건설설사업소 지방토목기사보 이조영
하수파 근무를 명함.

연로파 지방기계기사보 최충현
운수행정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토목기사 동방원
도시가스사업소 파견근무를 명함.

자동차 운수사업소 지방기계기사보 문경연
도시가스사업소 파견근무를 명함.

(무선) 배광조
조선부지방통신기사보에 임함.
계획운영파 근무를 명함.

정태진

조선부지방약무기원보에 임함.
동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남해군교육청 건축기원 오동진
서울특별시전입을 명함.

지방건축기원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주택관리판실 주택건설과
근무를 명함.

서울구치소 지방건축기원보 송상철
서울특별시전입을 명함.

지방건축기원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성북구근무를 명함.

서울중앙통신국 통신사 김홍경
서울특별시전입을 명함.

지방통신기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비상계획판실계획운영파근무를명함.

신탄진 연초체조장 전기기사 최영상
서울특별시전입을명함.

지방전기기사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